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3월 7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3월 20일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

나.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2011. 8. 4.)에 따른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권역별 도서관을 총괄하는 센터개념의 구미시립도서관 명칭을 변경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사업소 명칭변경(안 제19조)
 - 구미시립도서관 → 구미시립중앙도서관
-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 표기
(안 별표1, 별표2, 별표3)
- 관계법령의 정비(안 제13조, 제20조, 제23조)

라.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및 제19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성 수

○ 본 개정 조례안은

- 시 산하 행정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2011년 8월 4일부터 시행한 「도로명주소법」에 대응하고, 구미시립도서관을 권역별 도서관을 총괄하는 개념의 도서관인 구미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제19조제5호에 ‘구미시립도서관’을 ‘구미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타 도서관의 총괄센터기능으로 하고, 관장 사무에 선산분관, 인동분관을 삭제 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 직속기관,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대비코자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구미시립도서관 명칭은 개관 당시 1개소이던 도서관이 5개소로 확대 운영되면서 총괄하는 개념의 구미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다른 도서관을 통합 관리·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